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66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김병주·유용원·어기구
박용갑·허성무·김태선
김성희·이언주·황명선
김소희·이달희·강준현
김상훈·민병덕·김예지
김태호·김의겸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은행법」상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방산, 조선 등 대형·장기 수출계약이 늘어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음. 다만 이러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방산·조선과 같이 대형·장기 계약이 불가피한 국가안보·경제 핵심산업의 수출금융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방산·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와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수출금융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입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동일한 개인·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함. 다만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환율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와 함께, 방산·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를 한도 적용의 예외로 규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방산, 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5.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3(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u>

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
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
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
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
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
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
된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
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
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
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
우

4. 방산, 조선 등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
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
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
의하여 인정한 경우

5.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
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
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
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
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
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
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
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
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
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
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
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